

감리지적사례 FSS/2106-14 :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연결재무제표 작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0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헤드램프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해외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증가로 인해 향후 완성차업체의 단가인하 압력이 예상되자 해외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조정하기로 계획하였다.

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로컬기준 재무제표에서 영업이익을 직접 조정할 경우 해외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등이 우려되어,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위해 해외 종속회사의 로컬기준 재무제표를 K-IFRS 기준 재무제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산조정사항으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등을 임의로 조정하여 영업이익을 조작하였고, 회사는 영업이익이 왜곡된 해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연결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과대·과소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① 회사는 해외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발생한 ’16년~’17년에는 매출액을 과소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금 계상과 관련하여 임의로 설정한 임금인상률, 할인율을 적용하여 급여를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으며, 제품의 불량 발생률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보증수리비를 과대계상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속회사의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소계상 하였으며, 영업이익이 급감한 ’18년에는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과대계상한 급여 및 보증수리비를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② 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조작한 해외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16년~’17년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으며, ’18년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고,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과 거래실질 등을 고려하여 해외 자회사의 결산조정 사항이 개념체계에 따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였고, 동 재무제표를 인용하여 작성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감사기준서 520(분석적 절차) 문단 7에 따르면, 감사인은 분석적 검토절차를 수행하여 다른 관련 정보와 불일치하거나 기대치와 유의적인 금액만큼 차이가 있는 변동이나 관계를 식별한 경우에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는 등 감사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의 분석적 검토를 소홀히 하여 매출 원가율이 4분기에 급격히 상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전년대비 매출원가율, 영업이익 등이 비경상적으로 변동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변동원인에 대한 회사 및 부문감사인의 설명을 듣는 형식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고, 동 설명내용이 매출원가율 등의 비경상적인 변동에 부합한 설명인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5. 시사점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는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초래하게 되므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회사 재무제표의 회계처리 오류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분석적검토 등 감사과정에서 파악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추가 테스트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